

[사 건 명] 행심 2018 - 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인천 ◎◎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7. 10.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10. 2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두차례에 걸쳐서 먼저 폭행하였고, 청구인의 폭력은 ●●●의 행위에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 폭행부분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이 사건 충돌을 청구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만큼,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폭력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의 목을 감은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을 때린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유발원인과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쌍방 폭행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가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비교형량요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한 피해학생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해학생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한 2018. 1.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점수계산은 적법하고, 심의결과 4점에

해당하여 3호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감된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7. 9. 20. 경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수영수업을 받던 중, ●●●이 친 물장구에 맞자, 청구인도 ●●●에게 물장구를 쳤다
- 나. ●●●이 청구인의 어깨를 치자,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두차례에 걸쳐서 먼저 폭행하였고, 청구인의 폭력은 ●●●의 행위에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 폭행부분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이 사건 충돌을 청구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만큼,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폭력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의 목을 감은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폭행을 먼저 유발하였고,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점이 있지만, 청구인이 ●●●의 얼굴을 때린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의 얼굴을 때린 것은 학교폭력상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감된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